

「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승인안은 2020년 6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, 2020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,921,182천원으로서, 이중 5건에 658,414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○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투표실시 | 62,004천원 |
| ○ 제13호 태풍 ‘링링’ 피해복구비 | 4,212천원 |
| ○ 제17호 태풍 ‘타파’ 및 제18호 태풍 ‘미탁’ 피해복구 | 556,298천원 |
| ○ 방림-횡성 농어촌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버스 운영 | 20,000천원 |
| ○ 농어촌민박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일제점검 | 15,900천원 임. |

3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의하면
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,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또한,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하며, 재해·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.

- 201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,921,182천원이며,
 - ▶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658,414천원이 지출결정되었고,
 - ▶ 그 중 207,205천원이 지출되고 428,402천원을 이월하였으며, 22,985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.

○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

- ▶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「방림-횡성 농어촌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버스 운영」 등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,
- ▶ 제17호 태풍 “타파” 및 제18호 태풍 “미탁” 피해복구를 위한 소하천(세천)수해복구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2019.10.25.일 지출을 결정하여, 실시설계용역 후 시설공사 발주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어, 다음연도로 이월이 예상됨에도 예비비를 지출하고 결정금액의 87% 인 428,402천원을 이월한 것은,
 -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서 명시한 “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”는 예비비 지출제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〈2019년도 예비비 사업 이월현황〉

(단위:천원)

세부사업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지출잔액	지출결정일	예비비지출사유
합 계	491,410	63,007	428,402	0		
소하천(세천) 수해복구사업	399,805	35,142	364,663	0	2019.10.25	제17호 태풍타파 및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
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	91,605	27,865	63,739	0		

【관련법령】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의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1항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(예비비 사용의 제한)

- ①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